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에 증원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및 인력 6명(6급 5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을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

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를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32명(행정사무관 5명, 세무주사 10명)”을 “27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으로, “세무주사보 6명”을 “세무주사보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9명(5급)”을 “21명(4급 2명, 5급)”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114명(6급 53명, 7급 4명)”을 “108명(6급 48명, 7급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68명(5급 9명)”을 “77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다음에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서기관 32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삭제하며,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를 신설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삭제한

다.

별표 6의2 중 총계 “928”을 “923”으로 하고, 일반직계 “924”를 “919”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서기관 32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삭제하며,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9”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신설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128”을 “126”으로 하고, 세무주사 “244”를 “243”으로 하며, 세무주사보 “165”를 “163”으로 한다.

별표 8 일반직 계 26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10 서기관 188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삭제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419”를 각각 “20,413”으로 하고, 서기관 188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삭제하고, 세무주사 “4,314”를 “4,309”로 하며, 세무주사보 “4,509”를 “4,508”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5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보 1명, 세무서기 1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6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

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2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2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 · 기획재정담당관 · 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 · 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u> ,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u> -----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생 략)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 · 빅데이터센터장 · 정보화운영담당관 · 홈택스1담당관 · 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u> 보한다.	② -----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장	제5조(인사기획과) -----

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② (생략)

③ 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화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5조의2(운영지원과)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②-----

-----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⑨ (생략)

제30조(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성동세무서·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③ 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④ ~ ⑫ (생략)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세무서) ①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으로-----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퍼센트-----

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
 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32명
 (행정사무관 5명, 세무주사 10
 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
 명, 세무주사보 6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
 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
 보 1명, 전산주사보 2명, 세무서
 기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19명(5급 5명, 6급 10명, 7
 급 4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
 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
 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14

 ----- 27명

(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 세무주사보 4명-----

② -----
 --- 21명(4급 2명, 5급 -----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08

명(6급 53명, 7급 4명, 8급 57명)
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한다.

⑤ ~ ⑦ (생 략)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
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 중 68명(5급 9명, 6급
58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 제40조에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국세청의 감사관 및 납세자보호
관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국세청의 세정홍보과장·학
자금상환과장, 국세공무원교육
원의 교수과장, 국세청 주류면
허지원센터장, 서울청의 송무3
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 대전
청·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부산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송무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명(6급 48명, 7급 3명)-----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 77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

<삭 제>

<u>보할 수 있다.</u> 제34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소득자료관리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②·③ (생략)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u>별표 6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3명, 세무서기 1명) 및 별표 10의2의 정원 7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1명)</u>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4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②·③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10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	--

신 · 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 · <u><신 설></u>	· · <u>1</u>	+1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 <u><신 설></u>	· <u>4</u>	+4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4</u>	<u><삭 제></u>	-4
·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 <u><신 설></u>	· <u>9</u>	+9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u>	<u>9</u>	<u><삭 제></u>	-9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전산사무관</u>	· <u><신 설></u>	· <u>1</u>	+1

<u>기술서기관</u> 또는 <u>전산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28	923	-5
일반직계	924	919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1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삭 제>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4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삭 제>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9	+9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9</u>	<u><삭 제></u>	-9
·	·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1</u>	+1
<u>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u>	<u>1</u>	<u><삭 제></u>	-1
행정사무관	<u>128</u>	<u>126</u>	-2
·	·	·	
·	·	·	
세무주사	<u>244</u>	<u>243</u>	-1
·	·	·	
·	·	·	
세무주사보	<u>165</u>	<u>163</u>	-2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8]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신 설></u>	<u>1</u>	+1
<u>과학기술서기관</u>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 · <u><신 설></u>	· · <u>5</u>	+5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4</u>	+4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5</u>	<u><삭 제></u>	-5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u>	<u>4</u>	<u><삭 제></u>	-4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0,419	20,413	-6
일반직 계	20,419	20,413	-6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5	+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4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삭 제>	-5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삭 제>	-4
·	·	·	
·	·	·	
세무주사	4,314	4,309	-5
·	·	·	
·	·	·	
세무주사보	4,509	4,508	-1

	.	.	.	
	.	.	.	